

#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위

-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2023. 5. 30.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. 6. 1.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-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3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.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<sup>1)</sup>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256억 3천 9백만원에서 319억 9천 2백만원으로 63억 5천 3백만원 증가하였고,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4억 9천 9백만원에서 14억 3천 9백만원으로 9억 4천만원 증가하였음.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○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'재무활동(예치금)' 금액이 당초 227억 6천만원에서 300억 5천 3백만원으로 72억 9천 3백만원 증가하여 32% 변경되었음.

### 〈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〉

#### 〈수입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
계	26,138	33,431	7,293
이 자 수 입	499	1,439	940
예 치 금 수 회	25,639	31,992	6,353

#### 〈지출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
계	26,138	33,431	7,293
비 용 자 성 사 업 비	3,278	3,278	-
예 치 금	22,760	30,053	7,293 (32%)
기 본 경 비	100	100	-

## 4. 검토 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72억 9천 3백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63억 5천 3백만원) 및 이자수입(9억 4천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(72억 9천 3백만원)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 재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### 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〉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
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재무활동(행정국 남북협력과)	22,760	30,053	7,293
보전지출(남북교류협력기금)	22,760	30,053	7,293
여유자금예치	22,760	30,053	7,293

※ 자료근거 :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,  
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23.5.30.) 재구성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‘재무활동(예치금)’ 금액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32.0%, 72억 9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기금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.

○ 한편, 남북관계의 경색과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2023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집행률은 예산현액(32억 7천 8백만원) 대비 7.2%(2억 4천 3백만원)에 불과하고, 하반기에도 저조한 사업비 집행으로 인하여 불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,

- 사업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사용되지만,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반복되는 불용원인 파악 및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#### <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세부 집행내역 >

(2023.5.31. 기준, 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현액	집행액	집행률	세부 사업실적
비융자성사업비	3,278	243	7.2%	2023년 평화통일안보 교육 공모사업
기본경비	100	7	7%	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

○ 또한, 예치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별 지출 일정을 감안하여,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최대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□ 예치금 관리현황 (2023. 5. 31. 기준)

○ 시금고 예치 현황

(단위 : 천원)

총 액	시금고 예치금	
	공공예금	정기예금, MMDA
32,266,002	466,002	31,800,000

○ 세부 내역

(단위 : 천원)

계정과목	금 액	기 간	이 율
공공예금	466,002	-	2.02%
정기예금	4,000,000	6개월	4.64%
	25,000,000	12개월	4.92%
MMDA	2,800,000	수시입출금	3.42%
합 계	32,266,002		

전문위원	김 정 덕	입법조사관	이 태 기
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